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2021.12.31.)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존 100개에서 105개로 확대(6개 상병의 5개 분류 추가 및 3개 상병 제외)하고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불일치 상병명(3개) 정정

2. 아울러, 위 고시 일부개정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고시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12.31.일부터 게시)

- 붙임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
 2.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관한 지침 1부
 3.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적용관련 질의응답(추가)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보건사무관 **임화영** 의료보장관리 전결 2022.1.3.
 과장 **유정민**

협조자

시행 의료보장관리과-4 (2022. 1. 3.)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의료보장관리과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682 팩스번호 044-202-3983 / rabbit1357@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